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장 등에 스마트 도면함 설치 근거 마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0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장 등에 스마트 도면함 설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2 . 제 안 일 : 2026. 05. 06.

3 . 회 부 일 : 2026. 05. 0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장 등에 스마트 도면함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의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외에 스마트 도면함(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및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2(공장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의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외에 스마트 도면함(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및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의 관계인²⁾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³⁾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자체 점검 결과 등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제48조)⁴⁾.

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등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목 적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등 소방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관리
구축·운영 주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청이 구축하고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에서 이용 중
주요 수록 정보	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도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② 자체점검 결과(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 ③ 소방활동 정보카드(건축물 구조·위치,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정보 등) ④ 그 밖에 소방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현장 활용 방식	화재 출동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출동대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 하는 등의 체계 운영
주요 연혁	• 2006년 ~ 2008년: 소방민원정보시스템(내부용) 최초 구축 • 2016년: 대국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오픈 • 2021년 ~ 2023년: 클라우드 기반 통합구축 사업 추진 • 2024년 1월: 표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개시 - 기존의 소방민원센터와 소방기술민원센터 등을 온라인 민원포털로 전산화 및 통합 • 2025년 ~ 현재: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중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건물 구조,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정보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⁵⁾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하고,

5) 소방활동 정보카드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현황, 건축물 구조·위치, 위험물 정보 등이 수록된 카드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록·관리됨(자료: 소방청).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소방예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소방대원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출동 후 건물 관계인(관리자 등) 면담, 현장 육안 확인 등을 통해 내부 구조 및 위험물 적재 위치를 보완적으로 파악하여 화재 등의 진압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의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및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2020년 이후 해마다 30,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역시 상당한 데, 2026년 3월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⁶⁾⁷⁾와 같이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나 폭발력이 강한

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시행일 2026.9.3.]

6)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개요(자료: 소방청)

- (일 시) '26. 3. 20.(금) 13:17(신고접수) → 19:12(초진) → 23:48(완진)
- (대 상) 안전공업(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 대전 대덕구 문평동 43-4)
 - ※ 철골조 3층(연면적 9,468.86㎡) / 대전119특수대응단(1.2Km), 대덕소방서(10.1km)
- (원 인) 조사 중 ※ 본관동 공장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 추정
- (인명/재산) 총 74명(중상 25명, 경상 35명, 사망 14명) / 조사 中

위험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연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합계	사망	부상	
2020	38,659	2,283	365	1,918	600
2021	36,267	2,130	276	1,854	1,099
2022	40,113	2,669	342	2,327	1,210
2023	38,857	2,477	283	2,194	954
2024	37,614	2,402	308	2,094	784
2025	38,344	2,737	346	2,391	2,350

(자료: 소방청)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7) 사고 원인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해당 공장은 2층을 불법으로 증축해 2.5층 복층 휴게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는 창문과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곳에서만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출처: 조선일보, ‘대전 안전공안 화재 참사’... 경찰, 업체 대표·안전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2026. 4. 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4/07/3JNY7IGKIJJD6HI7OZ6ERNHF6YE/>). 한편,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금속 가공 시 절삭유와 세척유를 다량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가 공장 내 집진 설비 및 덕트(배관) 내부에 오염물질로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 화재를 키우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도 있음(출처: 한겨레신문, 대전 안전공업 ‘2년에 1번꼴’ 화재... 전직 지원 “세척유 관리 허술”, 2025. 3.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845.html)

다만, 화재 현장에서 스마트 도면함을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스마트 도면함 활용 과정에서 초기 화재진압 착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 도착 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 직후 스마트 도면함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장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와 같이 화재 출동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출동대원에게 소방활동 정보를 전송해 주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화재 진압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스마트 도면함을 소방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 또는 표준 등 제도적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및 KFI 인증 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소방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용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현장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현행 소방용품 품질인증 개요>

구분	형식승인 (’73년~)	성능인증 (’86년~)	기 타	
			우수품질인증(’14년~)	KFI인증
근거	제37조	제40조	제43조 ⁸⁾	KFI 자체규정 ⁹⁾
대상지 정기준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관련 기본적 소방용품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등에 사용되는 보완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	기타 화재· 공공안전을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방용품
인증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임의검사
	미검정품 유통불가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인증절 차	신청서 접수→신청서 서류 검토→형식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형식승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성능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서류 검토→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 우수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KFI인증서 발급
	※ 인증업무 위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50조제2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수행
인증이 후 유통 전 품질관 리	제품검사(양산제품 대상)(제46조제1항) -생산제품검사(생산단위별):수시검사 → 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일정주기별): 정기검사 → 제품판매 ※업무위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50조제3항)		우수품질관리체계에 따른 유통(일정주기 별 재평가)	제품검사(양산제품 대상)(내규) -생산제품검사: 수시검사→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 정기검사→제품판매
품목	소화기 등 32개	소화전함 등 53개	소화기 등 32개	내진스토퍼 등 35개 (소방장비 별도)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 도면함은 단순한 정보제공 장치가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 작동 안정성,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현장 접근성 등 소방현장에 특화된 성능기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8) “우수품질인증”이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9) KFI인증이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이외에 소방차 등 64개 품목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하는 임의검사임.

따라서 스마트 도면함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방용품 품질인증 제도에 준하는 인증 또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스마트 도면함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관계인의 동 제도 수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마트 도면함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¹⁰⁾하여야 함. 따라서, 스마트 도면함의 현장 활용 효과와 인증·표준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인의 수용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스마트 도면함의 기능은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과 목적·내용이 중복되고, 건물 관리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도면함은 화재의 예방이나 진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방시설과도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소방시설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소방청은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장치 구입비, 설치비, 정보 등록·갱신 비용, 유지보수비 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스마트 도면함의 구현 방식, 설치 대상 범위, 관리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추정이 어렵다고 밝힘.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 도면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현행 소방예방정보시스템과의 내용 비교>**

구 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	스마트 도면함
제공 정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	○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 ¹¹⁾	○
	위험물 적재 위치	○	○
제공방식		① 화재 출동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송, ② 119현장지원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로 현장 대원이 직접 실시간 조회 가능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접속
비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은 설치허가 시 위치·구조·설비 도면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물 적재 위치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내에 관리되어 제공되고 있음 ¹²⁾	

문 의 처

02)6788-5351

11)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명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함. 점검의 종류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됨(법 제 22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중 점검업체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만 소방 예방정보시스템에 관리됨

12) 구체적인 화면은 [참고 2] 참조

참고 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3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① 공동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④ 종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운수시설 ⑦ 의료시설
- ⑧ 교육연구시설 ⑨ 노유자시설 ⑩ 수련시설 ⑪ 운동시설
- ⑫ 업무시설 ⑬ 숙박시설 ⑭ 위락시설
- ⑮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⑯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⑲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⑳ 자원순환 관련 시설
- ㉑ 교정 및 군사시설 ㉒ 방송통신시설 ㉓ 발전시설
- ㉔ 묘지 관련 시설 ㉕ 관광휴게시설
- ㉖ 장례시설(「의료법」 제36조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시설은 제외)
- ㉗ 지하가(지하상가/터널)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㉘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
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인 것
- ㉙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㉚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의무화 용도 및 주택부대시설 제외)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캡처 화면

(자료: 소방청)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은 특정소방대상물관리, 위험물관리, 화재안전조사관리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며, 소방활동 정보카드도 특정소방대상물관리 메뉴 내에 있음

▶ 조재환님 환영합니다
☆

소방에방정보시스템

민원접수관리 소방대상물관리 소방대상물점검관리 소방관련업체관리 소방관련자격자관리 위법사항관리 예방통계 시스템관리

메인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 ?

[소방대상물관리 >](#)
[특정소방대상물관리 >](#)

대상물구분
<전체>
<> 공공기관
관할시/센터

주용도
<전체>
대상물명

건물번호
관리명

건축구조
<전체>
<전체>
<전체>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등록데이터
☐ 주소 중복

건축물대장정보
☐ 건축물대장 정보별치 대상

데이타업로드
☐ 사용자 인증자
☐ 소유자명
☐ 주용도
☐ 주

부가정보
☐ 다중이용시설 포함
☐ 위험물 포함
☐ 목급1,

특정소방대상물관리
>

다중이용업 관리
>

위험물 관리
>

부가기능
>

설문조사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관리
>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

건축환경정보 관리
>

민원 완공 대상물 등록
>

특정소방대상물 수기 등록
>

소방교육 결과 등록
>

소방훈련 결과 등록
>

보고자료 출력
>

화재경계지구 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회
>

조회건수 29 건
※ 목록 지양 시, 조회건수가 많을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1~10~20). 다운로드에서 세로기준으로 누르기 하세요.

No	★	대상물관리번호	대상물구분	대상물상세구분	관할시	관할센터
1	★	36-730-2011-00000031	2급대상	스포츠경기,물품무...	세종특별자치시	보령119안전센터
2	★	36-730-2009-00001342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3	★	36-730-2009-00001323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4	★	36-730-2009-00001240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119안전센터
5	★	36-730-2009-00000603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6	★	36-730-2009-00000566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7	★	36-730-2009-00000259	2급대상	스포츠경기,물품무...	세종특별자치시	보령119안전센터
8	★	36-730-2009-00000248	3급대상	자동차재난차량처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119안전센터
9	★	36-730-2009-00000237	1급대상	연면적 15,000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부강119안전센터
10	★	36-710-2009-00000500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119안전센터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

건축환경정보 관리
>

민원 완공 대상물 등록
>

특정소방대상물 수기 등록
>

소방교육 결과 등록
>

소방훈련 결과 등록
>

보고자료 출력
>

화재경계지구 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회
>

조회건수 29 건
※ 목록 지양 시, 조회건수가 많을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1~10~20). 다운로드에서 세로기준으로 누르기 하세요.

No	★	대상물관리번호	대상물구분	대상물상세구분	관할시	관할센터
1	★	36-730-2011-00000031	2급대상	스포츠경기,물품무...	세종특별자치시	보령119안전센터
2	★	36-730-2009-00001342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3	★	36-730-2009-00001323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4	★	36-730-2009-00001240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119안전센터
5	★	36-730-2009-00000603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6	★	36-730-2009-00000566	일반대상	일반대상물	세종특별자치시	조지광119안전센터
7	★	36-730-2009-00000259	2급대상			

조재용님 환영합니다

소방대상물정보시스템

메인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대상물구분

전차-

주용도

전차-

관리번호

건축구조

전차-

주소

세움책

종목대입력

☐ 주소 중복

건축물대입력

☐ 건축물대장 정보불일치 대상

조희준님 6 건

※ 객체별 저장 시, 조회건수가 많을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o	★	대상물관리번호	대상
1	★	36-730-2011-00000031	2급
2	★	36-730-2009-000000259	2급
3	★	36-730-2009-000000237	1급
4	★	36-110-2023-000000082	2급
5	★	36-110-2014-000000347	일반
6	★	36-110-2013-000000235	2급

소방대상물변경관리

특정소방대상물변경 (상업건지(주)대중사업장)

조표시

소방항출 정보보장

개별

동원한

승원한

승소방시설

연락

위험물

운반/수리

감시/화재

작업자

활동계획

활동중지

유해화학

전기/가스

비파괴조사

도면관리

○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신고 정보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데이터는 '위험물관리-제조소등 관리대상관리'에서 대상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No	위험물구분	허가/설치일자	제조소등구분	제조소등유류구분	유류	물량	수량	단위	시설
1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4석유류	500	ℓ	
2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	3800	ℓ	
3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	400	ℓ	
4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	2300	ℓ	
5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	400	ℓ	
6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액)	200	ℓ	
7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	100	ℓ	
8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1류	경화간선염류	1000	kg	
9	위험물	2016-01-29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	2000	ℓ	
10	위험물	2010-04-06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	4000	ℓ	
11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	100	ℓ	
12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액)	200	ℓ	
13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알코올류	2010	ℓ	
14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	400	ℓ	
15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	1800	ℓ	
16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	400	ℓ	
17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	4200	ℓ	
18	위험물	1991-08-08	취급소	일반취급소	제4류	제4석유류	1000	ℓ	
19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	200	ℓ	
20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	400	ℓ	
21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액)	100	ℓ	
22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알코올류	2000	ℓ	
23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	1400	ℓ	
24	위험물	1991-08-08	저장소	육내저장소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	3600	ℓ	

위험물정보

448-0

588-0

581-10

42-0

199-7

7-11

▶

▶

▶

▶

▶

▶

